

지 · 상 · 중 · 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체신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이를 판매 또는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체신부 정보통신국에서 입수한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을 전기통신 관련 사업자들에게 유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형식승인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 관련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세칙(체신부 고시 제69호 1991년 6월 7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3년 5월 17일
체신부장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형식승인대상으로 선정 고시한 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영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체신부장관이 형식승인을 얻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가 자기사용을 위하여 휴대·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코드없는 전화기의 경우는 주파수 등이 전파법령에 정하는 기술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시회 또는 전람회예 출품하는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자재
3.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설치, 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용 기자재
3.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설치, 운용 또는 관리하는 전용 기자재

③영 제24조 제1호, 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연구소장(이하“소장”이라한다)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4조제1호의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가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제3조제8호에 의한 품목인 경우에는 소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제 2 장 형식승인 신청과 심사 등

제3조 (형식승인신청) ①형식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자재가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겸한 경우에는 주가 되는 기능의 기자재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 1부
2. 기자재의 세부 설계도면, 기능설명서, 제품 사양서, 사진 각 1부
3. 품질보증활동계획서 및 사후봉사활동 계획서 각 1부
4. 자체시험 검사설비현황, 인력현황 각 1부

④소장은 형식승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4조 (제출서류의 생략) 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조제3항의 첨부서류중 이미 제출된 서류중 일부에 대해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서류와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형식승인신청 시점으로 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2. 다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서류, 다만, 신청인은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자재가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임을 증명하는 지정시험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형식승인 심사) ①소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기자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출서류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기자재의 품질보증활동계획 및 사후봉사활동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4. 자체시험 검사설비현황 및 인력현황이 적절한지 여부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사업소를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회의 심의생략) 소장은 형식승인신청을 한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능이 단순한 기자재 또는 이미 유사한 기자재가 다수 형식승인된 기자재의 경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

제7조 (처리기간 등) ①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결과통보) 소장은 형식승인 신청된 기자재가 형식승인을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변경신고) ①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형식승인된 기자재에 대하여 별표 1에 정한 범위내의 경미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형식승인된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형식승인 해지) ①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된 기자재의 생산이나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형식승인된 기자재의 생산 또는 수입실태를 조사하여 생산 또는 수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해지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형식승인을 받은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정시험기관 등

제11조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상분야별로 지정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기자재의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 시험원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 (시험기관의 시험분야 추가지정신청)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시험대상 분야를 추가할 때에는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시험대상분야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3. 시험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추가되는 시험대상분야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원의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시험기관의 지정심사등) ①체신부장관은 규칙 제24조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와 시험원의 수 및 자격 등이 적절한지 여부
2. 객관적으로 공정한 시험업무 수행능력 여부
3. 제출서류 등이 적합한지 여부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기관을 방문·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험기관 지정승인 및 유효기간등) ①체신부장관은 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기자재에 관한 종전의 지정승인서를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형식승인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험성적서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적합하게 시험되고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당해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시험분야별 시험설비와 시험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 4 장 시험업무 등

제16조 (시험기준) ①시험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상 분야별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 제1장 총칙 및 제6장 단말장치의 조건 및 규격
2. 기술기준 제35조제1항 조보식5단위 인쇄전신부호의 규격
3. 기술기준 제15조제3항 단자함, 접속함, 가입자보호기의 규격(별표 3)
4. 전화기용 콘넥터 규격 및 전기적 조건(별표 4)
5. 광대역(4KHz 이상) 통신기기의 성능기준(별표 5)
6. 유선방송용전송기자재의 수신자 및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조건 및 규격
(종합유선방송국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시험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시험업무) ①시험기관의 장은 형식승인 대상 기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형식승인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시험업무의 정지 등) ①체신부장관은 규칙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지침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험기관의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체신부장관은 시험기관이 규칙 제25조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험업무의 금지 요구) ①체신부장관은 시험기관의 시험원이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시험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시험업무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험원이 소속된 시험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당해 시험원의 당해 시험업무에의 종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험원을 당해 시험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시험원이 시험업무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기자재 품질관리 등

제20조 (품질관리) ①형식승인된 기자재의 제조자는 당해 기자재의 품질이 보증되도록 자체 시험설비를 구비하여 품질관리활동을 행하고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형식승인된 기자재의 수입자는 그 제조자가 품질관리 활동을 행한 제1항에 준하는 자료들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확인 등) ①소장은 형식승인된 기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고 있는 품질관리활동이 적정한지 여부와 형식승인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품질보증전담기관(이하 "품질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은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그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업무의 대행 등) ①체신부장관 또는 소장은 제5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을 품질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형식승인된 기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확인을 품질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행한 품질보증기관은 그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신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 (이의처리등) ①형식승인신청을 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나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또는 지장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이의자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체신부장관 또는 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이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를 조사 처리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러한 내용을 이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양도등의 신고) 형식승인된 기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양도 등으로 인하여 승계하게 된 자 또는 형식승인 받은자가 생산장소 또는 사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형식승인 실적 보고) ①소장은 매익월 15일까지 형식승인 및 수입추천 실적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진흥회장은 제2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추천 실적을 작성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199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 입 추 천 서					
발급번호 :					
1. 수입자					
· 주 소 :					
· 성 명 :					
2. 수입추천기자재					
품명및HS	형명 및 규격	단 위	수 량	제조회사 / 국명	비 고
3. 용 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을 추천함.					
19 년 월 일					
전파연구소장					
3403344-02411일				210mm×29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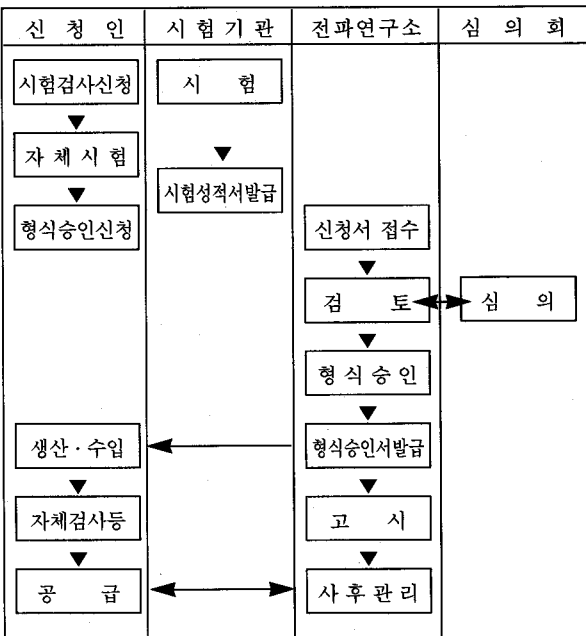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 전기통신기자재의 종류		⑧ 전자파장해 검정번호 및 일자
② 형 명		⑨ 형식검정번호 및 일자
③ 업 체 명		⑩ 수입추천번호 및 일자 (또는 수입면장)
④ 소재지	⑤ 본 사	⑪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
	⑥ 공 장	⑫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
⑦ 대표자 성명		⑬ 주민등록번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파연구소장 귀하 (서명 또는 지장)		
※ 구비서류 1.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 1부 2. 기자재의 세부설계도면, 기능설명서, 제품사양서, 사진 각1부 3. 품질보증활동계획서, 사후봉사활동계획서 각1부 4. 자체시험 검사설비현황, 인력현황 각1부 *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일부 생략		수수료(현금)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 수납액 수납자인

3403344-00111민 210mm×297mm
1990. 9. 21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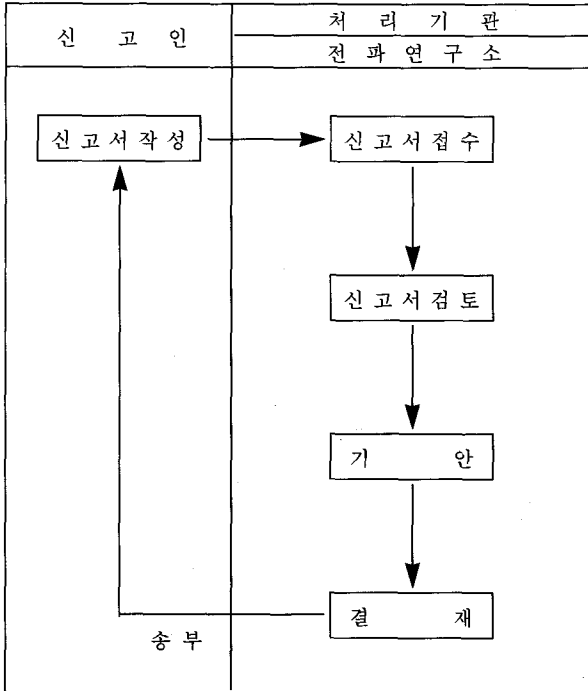


구비서류의 기재요령

1. 기자재 기능 설명서, 제품 사양서 및 사진
 - 가. 기자재의 명칭, 개요, 용도, 방식, 체원, 구성, 기능, 통신속도, 회선수 및 사양등의 개요표와 개요설명서 자료 및 사진
 - ① 기자재의 명칭중에 기호를 부가기입한 것에 대해서는 기호에 대한 기능, 변경내용을 명기한다
 - ② 복수의 구성 기자재에 의하여 1건의 신청 기자재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의 구성, 명칭, (실장) 수량을 기재한다
 - 나. 기자재의 취급 및 조작방법을 설명한 자료
 - ① 이용자 및 공사담당자들을 위한 설명서를 이해도 가능함
2. 시험성적서
3. 품질보증활동, 사후봉사 활동 계획서
 - 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의 조직, 체계 및 공정의 개요, 계측기, 제조설비의 관리, 보관, 출하의 관리를 설명하고 제조한 곳이 다른 회사일 경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료 및 양자간의 상호관계를 기재한다
 - 나. 기자재 보증서 내용, 소비자 불만과 상품 문제점에 관하여 국내에서 처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상호 및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기재한다
4. 자체 시험검사 설비현황, 인력현황
5. 기자재의 세부 설계 도면
 - 가. 신청 기자재의 외관, 구조 및 치수를 기재한 도면
 - ① 형식승인표시, 기자재 명판, 각종 마크부착, 로고등의 위치 및 내용을 도면에 기재한다
 - ② 기자재의 외관, 구조, 치수(단위 밀리미터)를 기재한다
 - ③ 도면에는 기자재의 조작보턴, 스위치, 표시램프, 단자기판, 실장위치 등에 대해서 표시, 그 명칭을 기재한다
 - ④ 도면에는 기자재의 정면도, 측면도, 상면도

지 상 증 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5호 서식)

품질관리 실적 기록부

①전기통신기자재의명칭		
②시험·검사자의 성명		
③시험·검사 년월일		
④시험·검사 장소		
⑤시험·검사 수량		
⑥시험·검사 항목	⑦시 험 성 적	⑦판 정 사 항
⑨문제점 및 시정사항		
⑩기타품질보증활동사항		

1. 형식승인 제품별로 기록요
2. 검사 수량에 대한 불량률 및 불량내용을 판정사항란에 기록
3.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개선하였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문제점 및 시정 사항란에 기록
4.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교육사항, 자체 품질보증활동 회의의 일 자 등을 기타란에 필히 기입요

3403344-00411일
1990. 9. 2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형식승인시험기관 재지정신청서

① 신청인	②명 칭			
	③대 표 자		⑤주민등록번호	-
	④주 소		⑥전화번호및우편번호	
	⑦시 험 분 야		⑧지정일자및지정번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또는 지장)

체신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	수 수 료
	없 음

(별표 1)

경미한 사항의 범위 (제9조 관련)

1. 공통
 - 가. 동일한 명칭이 부여 된 것. 다만, 부가기능등에 따라 세분화한 경우는 동일 명칭으로 본다
 - 나. 외관, 구조에 차이가 없는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외관·구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① 로고·마크·기능 표시 글자등의 대체
 - ② 부분 또는 전체의 색상, 색채의 재질 변경
 - ③ 부분 또는 전체의 재질 변경
 - ④ 외부 접속방법 변경(콘넥터, 나사 등)
 - ⑤ 조작 스위치·표시 등의 위치 변경
 - ⑥ 외형은 원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 이하의 컷수·형상의 변경
 - ⑦ 외함에 수용되는 경우 원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함의 컷수·형상의 변경
2. 기능 및 성능이 동일한 것. 다만 각 기자재류별로 동일한 범위로 간주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 자 재 별	동일한 범위로 간주되는 내용
전 화 기 류	1. 기본기능에 변경없이 다음의 기능을 스위치 등의 간단한 조작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가. 단축다이알 나. 재다이알 다. 원터치다이알 라. 고정다이알 마. 후킹 바. 착신표시(음량, 음질등)

3403344-02711민 210mm×297mm
1990. 9. 21 승인 (신문용지 54g/㎡)

지 상 중 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기자재별	동일한 범위로 간주되는 내용
전화기류	사. 램프표시 아. 보류 자. 송화차단 차. 핸드세트통화 카. 도어폰 파. 회선대응부 이외의 경우로서 정보처리속도 등 처리기능, 메모리용량, 외부접속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형식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통신회로방식·다이알신호방식·제어소자와의 차이 나. 확성통화기능·자동발신기능·자동응답기능의 유무 다. 육성통화 이외의 통신기능의 차이 라. 기자재 기능 이외의 기능으로 단독으로 상품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구내교환기류	1. 기본기능에 변경없이 다음의 기능을 스위치 등의 간단한 조작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가. 내선전화기 나. 다이알인 다. 자동착신호출분배 라. 회의통화 마. 전송전화 바. 자동발신 사. 자동응답 아. 구내방송 자. 통신관리 차. 통화 이외의 통신기능 카. 도어폰 타. 중계대 방식 파. 전원방식(통화전류의 공급방식에 관계되는 것은 제외) 아. 회선대응부 이외의 정보처리속도 등 처리기능, 메모리용량, 외부접속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형식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통화로의 방식·구성·소자의 차이 나. 통화전류 공급방식의 차이 다. 제어방식, 제어소자의 차이 라. 배선방식의 차이 마. 내선 제어신호 전송방식의 차이 바. 팩키지 인터페이스의 차이 사. 최대 수용회선(국선, 내선, 국선+내선 등) 아. 수용회선 증설단위의 차이 등 기본적인 요소의 차이
데이터다중화장치 또는 정통신용 신호 변환장치류	1. 기본기능에 변경없이 다음의 기능을 스위치 등의 간단한 조작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가. 루프백 나. 등화, 백워드 기능 다. 송출레벨조정 라. 오류검사 마. 신호감시 바. 송출시기 사. 램프표시 아. 통신관리기능 자. 회선대응부이외의 정보처리속도 등 처리기능, 메모리용량, 외부접속 차. 전화기류의 제1항 가호 내지 바호에 해당하는 사항(망제어기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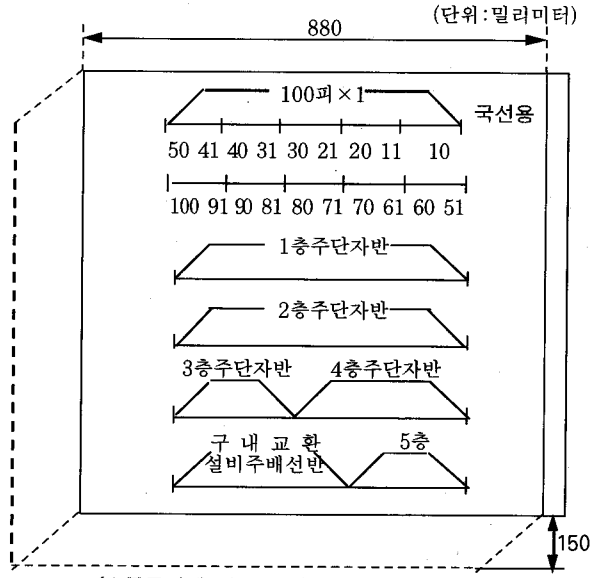
기자재별	동일한 범위로 간주되는 내용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형식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반송주파수 변경의 차이 나. 통신방식(2선, 4선(전이중, 반이중))의 차이 다. 통신속도의 차이 라. 변조방식의 차이 마. 동기방식의 차이 바. 망 제어기능의 차이 또는 유무 사. 통화기능의 유무 아. 수용 회선수의 차이 자. 제어소자의 차이
정보통신 단말장치류	1. 기본기능에 변경없이 다음의 기능을 스위치 등의 간단한 조작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가. 메모리 나. 원고 또는 기록종이 크기 다. 축소, 확대 기능 라. 데이터다중화장치 또는 정보통신용신호변환장치류의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형식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협동계수의 차이 나. 통신제어순서의 차이 다. 부호화 방식의 차이 라. 팩시밀리당 대응기능의 유무 마. 데이터다중화장치 또는 정보통신용신호변환장치류의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기타의 통신기기류	1. 기본기능에 변경없이 다음의 기능을 스위치 등의 간단한 조작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가. 정보통신단말장치류의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나. 기본메시지이외의 부가메시지 및 정보요소 다. 팩킷교환모드의 추가(팩킷교환기능을 다른 회로기관으로 실현하는 경우는 형식승인신청에 해당됨) 라. 아날로그망과의 접속(통화 이외의 송출전력) 2.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범위로 인정되지 아니며 형식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기존 형식승인 기자재에 NCTE기능의 추가 나. 기본에 일차군속도의 추가 다. 일차군속도에 기본기능의 추가 라. 기본메시지 변경 마. 정보통신단말장치류의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별표 2]

시험분야별 시험설비 및 시험원의 수 (제11조 관련)

분 야	시 험 설 비	시험원의 수
유선분야	· 절연저항측정기 · DC전압전류계 · 횡중평형시험기 · AC전압전류계 · 정전용량측정기 · 가변저항기 · 멀티메타 · 감쇄기 · 레벨메카 · 스토리지오실로스코프 · 주파수특정기 · 전원공급장치 · 측파대분석기 · 항온항습측정실 · 신호발생기 · 충격전압발생기 · 전화기종합측정기 · 진동시험기 · 반사감쇄측정기 · 낙하시험충격장치	5 명
무선분야	· 측파대분석기 · 의사부하 · 공중선전력측정장치 · 전원공급장치 · 주파수측정기 · DC전압전류계 · 신호발생기 · AC전압전류계 · 왜율분석기 · 스토리지오실로스코프 · 주파수편이계 · 차폐실	5 명

나. 단자함의 규격



[표준규격에 따른 국선용 단자반 설치 예]

[별표 3]

단자함, 접속함 규격 및 가입자보호기 성능기준 (제16조 관련)

1. 단자함

가. 국선수용단자 등의 규격

특성 및 규격	국선 단자	국선 단함
전기적특성	절 연 저 항	50메가옴 이상
	접 속 저 항	0.01옴 이하
구성요건	보호및지지도물	합체 또는 지지대 합체
	단 자	접속자 및 기관
	회 선 표 시 물	각인 또는 표시판 표시판
	개 폐 장 치	개방 또는 문 개방관 또는 문
제절요건	보 안 장 치	휴지 기능 및 파괴기능
	보호및지지도물	연강또는동등이상 두께1.5mm이상의 연강판또는동등이상
	기 관 및 단 자 반	합성수지또는동등이상 합성수지
	접 속 자	황동·인청동또는동등이상 황동·인청동또는동등이상
접속볼트및너트	황동 (니켈도금 또는 크롬메이트 처리)	
고정볼트및너트	연강 (니켈도금)	

- 주) 1. 절연저항측정조건 : 상온, 상습, 보호 및 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2. 접속저항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주배선반의 규격은 공중통신용품의 수준 이상일 것.
4. 옥내단자함의 규격은 국선단자함 규격을 적용할 것 (보안기능을 제외함)
5.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등이 없어야 하며, 옥외용은 방수될 것.
6. 합체의 크기는 필요한 용량의 보안장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7. 기타 규격은 공중통신용품의 수준 이상일 것.

다. 단자함 규격은 기술기준 제21조 제4항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속함 규격

가. 접속함 규격은 기술기준 제21조 제4항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입자보호기 성능기준

보호기 성능은 다음 각호와 같아야 한다.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호제3항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보호기는 1×40마이크로초 200암페어(시험전원)를 2분간격으로 100회 인가한 때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냉각 후 직류방전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보호기는 상용전원 5암페어(시험전원)를 3분 간격으로 1초간 10회 인가한 때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냉각 후 직류방전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보호기는 각각의 국선단자와 접지단자간에 60Hz 방전개시전압 5암페어의 전원을 방전되는 상태로 15분간 인가한 때 발화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전기적 조건

가. 핀의 재질은 Modular의 경우에는 금도금(0.254um)으로 하고, 4단자형의 경우에는 인청동으로 할 것.

나. 도체와 몸체간 및 도체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볼트로 측정하여 200메가옴 이상일 것

다. 500회 이상 삽입 인출하였을 때 위치변동과 탈락이 없고 기계, 전기적 특성을 가질 것.

라. Modular형 전축심선은 6심 및 8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마. Modular형 잭 및 4단자형 플러그, 잭(콘센트) 등의 접속단자에는 L1, L2를 제외함. Position별로 명칭 및 용도를 표시할 것.

(별표 5)

광대역 통신기기 성능기준(제16조 관련)

1. 송출전력 허용범위

가. 사용주파수 대역내에서의 평균레벨은 기기 해당 임피던스에서 -8dBm이하이고 최대레벨은 0dB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사용주파수 대역외에서는 각 4kHz밴드로 측정하여 평균레벨보다 -30dBm이하이어야 한다.

2. 정보통신기기의 통신속도 허용오차

가. 공칭통신속도로 부터 $\pm 0.1\%$ 이내로 되어야 한다.

(별표 4)

전화기용 콘넥터 규격 및 전기적 조건(제16조 관련)

1. 전화기용 콘넥터

가. Modular형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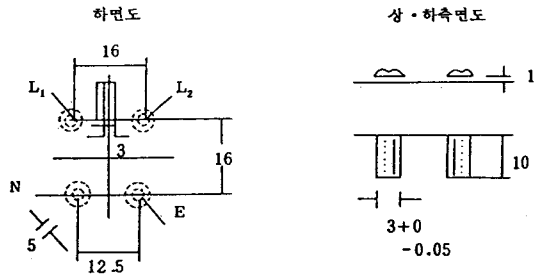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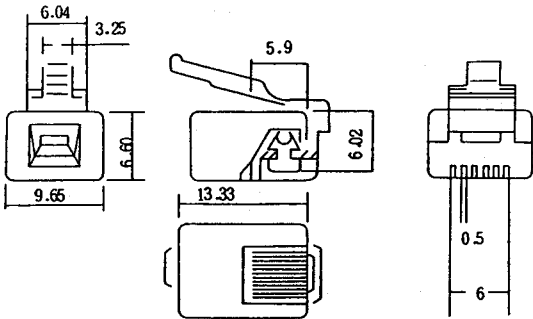
나. 4단자형 규격

· 플러그

(단위:밀리미터)

· 플러그

(단위:밀리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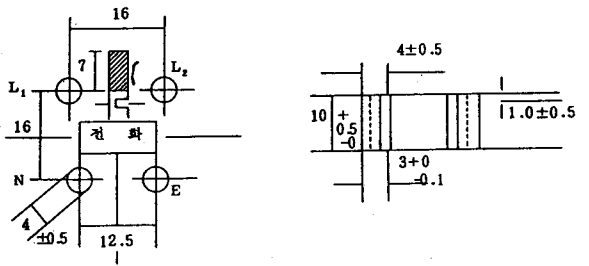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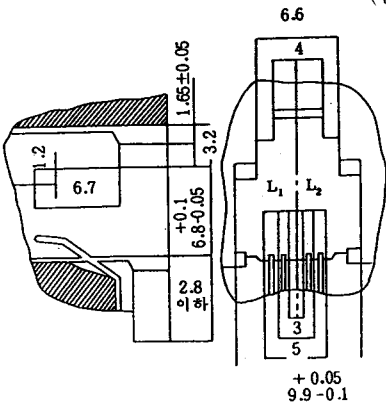


· 잭

(단위:밀리미터)

· 잭 (콘센트)

(단위:밀리미터)



(위치도)

(규격도)